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외 기강 문란행위 경고 처분〉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50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1.
3. 회부연월일 : 2024.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중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회복지요원의 경우 제재처분의 대상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일탈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이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도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기강 문란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지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생략)	제33조(사회복지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복무기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의 기강 문란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최근 유명 연예인 출신 사회복지요원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중 음주 운전한 사실이 보도¹⁾되었고,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지요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근무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해당 조치에 대한 타당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됨.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 명/ '24. 12월 말 기준)

구 분	복무이탈*			복무의무위반**		
	소 계	복무연장	고 발	소 계	경고 (복무연장)	고 발
'24년	912	695	217	981	961	20
'23년	1,087	826	261	1,038	1,026	12
'22년	990	754	236	1,087	1,077	10
'21년	819	638	181	924	915	9

* 복무이탈 시마다 복무연장(이탈일수(1일) + 5일 연장복무), 8일 복무이탈한 경우 고발

** 복무의무위반 시마다 경고(5일 연장복무) 처분, 위반 사유별 경고 누적 시 고발

☐ 현행법 상²⁾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근무시간 외 해당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

☐ 이에 개정안은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경고

1) 병무청 "00 별도 징계 없다"..."음주운전 적발은 근무시간 이후"(SBS보도 2024.8.8.)

2)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기간 중 품위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현역병과의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형태³⁾가 상이하므로 각각의 복무 환경 특수성⁴⁾에 대한 고려없이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유사한 복무 형태를 보이는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행 병역 관계 법령상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 행위를 이유로 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복무 형식으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을 제재 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주요 역종별 품위손상행위 처벌 기준>

구 분	근무시간 내 품위손상	근무시간 외 품위손상
현역병	근무시간 내외 불문하고 징계 가능	
사회복무요원	경고·연장복무 처분	처벌 규정 없음
대체복무요원	경고·연장복무 처분	처벌 규정 없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업체(사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 자체 징계로 견책·감봉조치 등 가능	

* 자료 : 국방부

3) 현역병 : 군부대 내 합숙 복무, 사회복무요원 : 개인 주거지에서 출퇴근 복무

4) 현역병의 경우 부대 내 합숙 복무, 전투 준비·훈련, 초병으로서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병행하여 근무시간 구분 불가

- 따라서, 근무시간 중이 아닌 근무시간 외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하여 추가로 제재 조치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사회복지복무요원 복무형태의 특수성 및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제재 조치 필요성에 대한 입법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 및 병무청은 사회복지복무요원 복무를 관리하는 기관이 근무시간 외 품위 손상행위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관리할 임무가 부여된다면 사회복지복무요원 활용 기피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